

## 1. 제안이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찰간부후보생” 용어를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채용과 관련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 및 시험관리 동원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채용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에 따라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 대신 국가안전보장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안보”를 사용하여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한 것에 맞춰 안보수사경찰의 업무를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보”로 변경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의 계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경찰간부후보생”의 명칭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안 제6조제4호, 제35조제2항)
-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제17조제1항, 제33조제3호,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42조제1호, 제44조제1항, 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 제4항, 제46조제1항, 제2항)
- 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

7조)

- 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안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1호, 별표3)
- 마.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의무복무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복무 중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 바. 시험관리 동원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45조제5항 삭제, 안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신설)
- 사. “보안경과”를 “안보경과”로 변경(안 제3조)
- 아. “보안”을 “안보”로 변경(안 제49조)
- 자. 국가수사본부장 명예퇴직 정년잔여기간 계산 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차. 인용오류 조문 수정(안 제16조제7항)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0271호, 제3112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제33조제3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의 개정 규정 중 제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조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제1호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경찰간부후보생”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하고, 제44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시험관리관)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의 실시, 진행, 감독을 위해 필요한 시험감독관, 진행요원 등 시험관리관(이하 “시험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4(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

제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제목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을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안보경과

제49조 중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을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로 한다.

제50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명예퇴직)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연령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 중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안보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로 한다.

■ [별표 3]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  
부개정령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41조제1항 관련)

| 시험별       |            | 경과별  |      | 일반     |      |                |      |
|-----------|------------|------|------|--------|------|----------------|------|
|           |            | 분야별  |      |        |      |                |      |
|           |            |      |      | 일반(보안) |      | 세무·회계          |      |
|           |            |      |      |        |      | 사이버            |      |
| 제3차<br>시험 | 필수         | 한국사  | -    | 한국사    | -    | 한국사            | -    |
|           |            | 영어   | -    | 영어     | -    | 영어             | -    |
|           |            | 형사법  | 120점 | 형사법    | 120점 | 형사법            | 120점 |
|           |            | 헌법   | 60점  | 헌법     | 60점  | 헌법             | 60점  |
|           |            | 경찰학  | 120점 | 세법     | 80점  | 정보보호론          | 80점  |
|           |            | 범죄학  | 60점  | 회계학    | 80점  | 시스템·<br>네트워크보안 | 80점  |
|           | 선택<br>(1개) | 행정법  | 40점  | 상법총칙   | 60점  | 데이터베이스론        | 60점  |
|           |            | 행정학  | 40점  | 경제학    | 60점  | 통신이론           | 60점  |
|           |            | 민법총칙 | 40점  | 통계학    | 60점  | 소프트웨어공학        | 60점  |
|           |            |      |      | 재정학    | 60점  |                |      |

비고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2.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3. 경찰학: 경찰행정법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4.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br>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br>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br>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br>무원에게만 부여한다. | 제3조(경과) ①-----<br>-----<br>-----.<br>-----<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u>보안경과</u>                                                                                    | 3. <u>안보경과</u>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br>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br>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br>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br>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br>-----<br>-----<br>-----.<br>1. ~ 3. (현행과 같음)             |
| 1. ~ 3. (생    략)                                                                                  | 4. ----- <u>경위</u>                                                              |
|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경찰</u><br><u>간부후보생</u> , 「경찰대학 설치                                             | <u>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u> , ---<br>-----<br>-----<br>-----<br>-----<br>-----<br>----- |
| 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학생<br>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br>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직<br>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br>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                                                                                 |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① ~ ⑥ (생략)

⑦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  
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법  
제10조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시  
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  
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생략)

<신설>

① ~ ⑥(현행과 같음)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  
-----  
-----  
-----.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  
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  
무 중에 있는 사람이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  
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  
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

|                                                                                                                                                            |                                                                                                      |
|------------------------------------------------------------------------------------------------------------------------------------------------------------|------------------------------------------------------------------------------------------------------|
|                                                                                                                                                            | 을 말한다.                                                                                               |
|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br>-----<br>-----<br>-----<br>-----<br>-----<br>-----<br>-----<br>-----<br>--. |
| 1.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 시·도경찰청장                                                                                                                               | -----                                                                                                |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도경찰청장                                                                     | -----<br>-----<br>-----<br>-----<br>-----                                                            |
|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 3. <u>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u> -----<br>-----<br>-                                                            |
|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생략)                                                                                                                                        | 제35조(시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교육                                                                                                                                          | ②-----                                                                                               |

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 법 제10조제2항에 따  
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의 공고, 시험의 구분 등  
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제1  
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제34조제1항의 “공개경쟁채  
용시험”, 제35조제1항의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제36조제1  
항의 “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같은 조 제2항의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각  
각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으로 본다.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생 략)

②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  
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027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37조(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로 한다.

③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생략)

⑥ 삭제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필기시험) ①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으며,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2, 별표 3

-----.

③-----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④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1조(필기시험) ①-----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

및 별표 4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  
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 2. (생 략)

② 삭 제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채  
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위 이상 및 경찰간부후보  
생: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3. (생 략)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생  
략)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합격자  
를 결정한다.

1. 경찰공무원(순경은 제외하  
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찰  
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나목의 전 과  
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

-----  
-----  
-----.

1. ~ 2. (현행과 같음)

제42조(출제수준) -----  
-----  
-----.

1. -----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  
-----

2.·3.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1. -----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  
-----

|                                                                                                                                                                                  |                                                                                                        |
|----------------------------------------------------------------------------------------------------------------------------------------------------------------------------------|--------------------------------------------------------------------------------------------------------|
| 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제44조(응시수수료) ①경찰공무원<br>의 채용시험 및 <u>경찰간부후보생</u><br><u>공개경쟁선발시험</u> 의 응시자는<br>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br>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4조(응시수수료) ①-----<br>----- <u>경위 공개경쟁</u><br><u>채용시험</u> -----<br>-----<br>-----.                     |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 3.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u><br><u>발시험</u> : 7천원                                                                                                                                      | 3. <u>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u> -----<br>-----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br>험실시권자는 경찰공무원 채용<br>시험 및 <u>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u><br><u>쟁선발시험</u> 의 출제, 채점, 면접<br>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br>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br>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br>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br>-----<br>----- <u>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u><br>-----<br>-----<br>-----<br>-----<br>----- |

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  
하여는 그 때부터 5년간 경찰공  
무원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  
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험위  
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  
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경위 공개경쟁채용  
시험-----  
-----.

⑤ <삭제>

제45조의3(시험관리관) 시험실시  
권자는 시험의 실시, 진행, 감독  
을 위해 필요한 시험감독관, 진  
행요원 등 시험관리관(이하 “시  
험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5조의4(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  
당 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  
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46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 7. (생략)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  
-----  
----- 안보 -----  
-----  
-----.

## <신 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  
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  
(제41조제1항 관련)  
(생    략)

제50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명예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교육정책담당관 |                  |
|---------|------------------|
| 연 락 처   | 02 - 3150 - 2832 |

| 안보기획관리과 |                  |
|---------|------------------|
| 연 락 처   | 02 - 3150 - 1488 |

| 인사담당관 |                  |
|-------|------------------|
| 연 락 처 | 02 - 3150 - 1208 |